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① 1인 이상의 사원을 구성하고, ② 정관을작성한 후, ③ 출자의무를 이행한 다음, ④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모든 유한책임회사의 설립행위가 완료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을 위해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하면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으며,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양도가 가능합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1
1. 회사제도 이해하기 4
1.1. 회사와 유한책임회사 4
1.1.1. 회사의 개념 4
1.1.2. 유한책임회사 개관 6
2. 유한책임회사 설립 10
2.1. 사원구성 및 정관작성 등 10
2.1.1. 사원구성 및 상호 정하기 10
2.1.2. 정관의 작성 등 11
2.2. 설립 시 출자이행 12
2.2.1. 사원의 출자이행 12
2.3.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14
2.3.1. 사업인허가 및 세금납부 14
2.3.2.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16
3. 유한책임회사의 운영 20
3.1. 업무집행 및 대표권 20
3.1.1. 업무집행자 20
3.1.2.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22
3.2. 사원의 지분 25
3.2.1. 사원지분의 양도 등 25
3.3. 사원의 가입과 탈퇴 26
3.3.1. 사원의 가입 26
3.3.2. 사원의 퇴사 27
3.4. 본점과 지점 30
3.4.1. 본점의 이전 30
3.4.2. 지점 설치와 이전, 폐지 32
3.5.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34
3.5.1. 재무제표의 작성 등 34
4. 회사의 합병, 소멸 등 36
4.1.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36
4.1.1. 영업양도 36
4.1.2. 합병 38
4.1.3. 조직변경 41
4.2. 유한책임회사의 소멸 43
4.2.1. 해산 및 회사의 계속 43
4.2.2. 유한책임회사의 청산 45

1. 회사제도 이해하기

1.1. 회사와 유한책임회사

1.1.1. 회사의 개념

회사란?

회사의 개념

▪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상법」 제169조). 따라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법인이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회사의 특성

▪ 영리성

▹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외적 수익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와 같은 구성원에게 분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법인성

▹ 회사는 법인성을 가져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법인성을 갖는다는 것은 구성원인 사원과 회사는 별개의 인격을 가지므로 회사는 사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사원은 회사재산에 대해 직접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회사의 종류

「상법」상 회사의 종류

▪ 「상법」에서는 회사를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 ⑤ 유한회사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70조).

합명회사

▪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12조제1항 참조).

▪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전담할 사원을 정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여러 명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200조 및 제207조 참조).

> ※ 합명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합명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68조 및 제279조 참조).

▪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유한책임사원은 대표권한이나 업무집행권한은 없지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시할 권한을 갖습니다(「상법」 제273조, 제277조 및 제278조 참조).

> ※ 합자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합자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사모(私募)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기업 등 새로운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개정, 2012. 4. 15. 시행) 제·개정이유서 참조].

▪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87조의2 및 제287조의7 참조).

▪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 놓아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2제1항 및 제287조의19 참조).

> ※ 이 콘텐츠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주주)으로 구성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채권자에게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331조 참조).

▪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므로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이를 소집해야 하고,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와 같은 감사기관을 둡니다(「상법」 제361조, 제365조, 제382조, 제389조 및 제409조 참조).

※ 주식회사는 주식을 단위로 자본이 구성되므로 자본집중이 쉽고,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이 적어 공동기업의 형태로 자주 이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회사 형태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5%에 달합니다[국세통계 > 세목별 검색(2025) > 8-1-2. 법인세 신고 현황II, 국세청 국세통계].

> ※ 주식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주식회사 설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의 한도에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553조 참조).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상법」 제561조, 제562조 및 제547조 참조).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주식회사와 달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갖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 유한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한회사 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 유한책임회사 개관

유한책임회사란?

유한책임회사의 개념

▪ "유한책임회사"란 미국의 유한책임회사제도를 참고하여 2011년 개정 상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기업형태로, 각 사원들이 출자금액만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되는 회사를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유한책임회사의 특성

▪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의 주주들이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투자액의 한도 내에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동일하지만, 주식회사가 상대적으로 경직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최저자본금제도가 없으며, 이사나 감사 등의 기관을 둘 필요도 없는 등 상대적으로 유연하며 탄력적인 지배구조를 그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에 적합합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따라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유한책임회사와 다른 회사의 차이점

▪ 유한책임회사와 「상법」에 따른 그 밖의 회사는 다음의 차이를 갖습니다.

구분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구성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주주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사원의 수	2인 이상	각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사원의 책임범위	직접, 연대, 무한책임	(무) 직접, 연대, 무한책임 / (유) 직접, 연대, 유한책임	간접, 유한책임	간접, 유한책임	**간접, 유한책임**
출자 목적물	재산, 노무, 신용	(무) 재산, 노무, 신용 / (유) 재산	재산	재산	**재산**
업무집행기관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이사회, 대표이사	이사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

유한책임회사 설립절차 및 운영 개관

유한책임회사 설립개관

▪ 정관의 작성

▹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출자의 목적 및 가액, 자본금의 액 등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 및 제287조의3).

▪ 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제2항).

▹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원은 재산출자만 가능합니다(「상법」 제287조의4제1항).

▪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

▹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목적, 상호, 존립기간, 자본금의 액, 업무집행자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1항).

※ 유한책임회사 설립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 및 각종 필요서류, 유한책임회사 설립에 관한 온라인 민원신청,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 유한책임회사 설립 전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운영 개관

▪ 업무집행자의 지정과 업무집행

▹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합니다.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가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2제1항 및 제2항 전단).

▹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5제1항).

▪ 유한책임회사의 대표권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9제1항 및 제2항).

▹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9제3항).

▹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9제5항 및 제209조제1항).

▪ 사원의 가입과 퇴사

▹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원을 가입시키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287조의23제1항 및 제287조의16).

▹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① 임의퇴사, ②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정관에서 정한 사유, 총사원 동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제명 등), ③ 법원의 제명에 따른 강제퇴사, ④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등과 같은 사유로 유한책임회사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4, 제287조의25, 제287조의26, 제287조의27, 제287조의29, 제217조,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 및 제224조).

▪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 등

▹ 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소재지가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 유한책임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171조, 제287조의5제3항 및 제182조제1항).

▹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2항 및 제181조).

▹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3항 및 제182조제2항).

▹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지점폐지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4항).

▪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3 및 「상법 시행령」 제5조).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하 “잉여금”이라 함)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잉여금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상법」 제287조의37제1항 및 제4항).

2. 유한책임회사 설립

2.1. 사원구성 및 정관작성 등

2.1.1. 사원구성 및 상호 정하기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구성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해야 하므로,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 참조).

설립목적 정하기

회사의 설립목적

▪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정관을 작성할 때 반드시 회사의 목적을 기재해야 하므로, 정관작성 전에 미리 회사의 설립목적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제1호 참조).

▪ 또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유한책임회사의 목적사업은 반드시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참조).

> ※ 그 밖에 회사의 설립목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식회사 설립』의 < 주식회사 설립준비-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설립목적 정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상호 정하기

상호 정하기

▪ 회사의 이름을 상호(商號)라고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상호에 반드시 '유한책임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및 제19조 참조).

상호 결정 시 유의사항

▪ 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유한책임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제4조).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8조제4항제1호).

상호등기

▪ 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 사항이므로 이후에 설립등기를 하면 자동으로 상호가 등기되며, 별도로 상호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37조제1항).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동일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Q. 유한책임회사 상호를 등기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비슷한 상호가 너무 많아서 회사상호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다른 회사가 등기한 상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으므로, 회사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선정한 상호가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기존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지은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열람·발급 →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 등기상호검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이 경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상호가등기

▪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2조의2제1항).

▪ 유한책임회사의 상호가등기에 관한 내용은 주식회사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 그 밖에 회사상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식회사 설립』의 < 주식회사 설립준비-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회사상호 정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정관의 작성 등

정관의 작성

사원의 정관작성

▪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절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본점의 소재지

5. 정관의 작성년월일

6.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7. 자본금의 액

8.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상대적 기재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말합니다.

▪ 유한책임회사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지분의 양도방법(「상법」 제287조의8제3항), 회사대표인 업무집행자의 선정(「상법」 제287조의19제2항), 공동대표의 지정(「상법」 제287조의19제3항), 사원의 퇴사권(「상법」 제287조의24), 사원의 제명선고(「상법」 제287조의27), 퇴사 사원의 지분환급(「상법」 제287조의28), 잉여금의 분배(「상법」 제287조의37) 등이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임의적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해당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임의대로 실행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정관에 규정할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 따라서 유한책임회사는 강행규정, 사회질서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예: 영업연도의 결정)을 정관에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방법

▪ “정관의 변경”이란 회사의 근본규칙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의 정관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등이 정관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 「상법」상 정관의 변경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정관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설립 시 만든 원시정관에서 정관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금지규정에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6).

2.2. 설립 시 출자이행

2.2.1. 사원의 출자이행

사원의 출자의무

출자란?

▪ “출자”란 유한책임회사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노무·신용을 급부하는 것 또는 그 급부의 목적물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사원의 출자의무

▪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현물)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제2항).

출자의 종류

▪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87조의4제1항). 따라서 사원은 금전 또는 현물출자만 가능합니다.

구분	출자의 내용
재산출자 (금전 또는 현물출자)	**재산출자에는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① 금전출자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②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현물출자 할 수 있는 재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동산, 여러 종류의 물권(物權)·채권·유가증권 등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노무출자	불가능
신용출자	불가능

출자의 이행

출자이행 시기 및 방법

▪ 유한책임회사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출자 방법
금전출자	금전의 지급
현물출자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제3항)

출자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 사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8, 제195조 및 「민법」 제705조).

▪ 또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은 사원의 제명사유가 되므로,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명에 필요한 결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업무집행자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7제1항, 제205조제1항, 제287조의27 및 제220조제1항제1호).

사원의 책임

▪ 사원이 출자를 하게 되면, 사원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상법」 제287조의7).

자본금 증감 시 출자변경등기

출자변경등기

▪ 자본금의 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4항).

출자변경등기 시 제출서류

▪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출자변경등기를 할 때, 등기신청인은 출자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8호 및 제59호 참조).

구분	자본금 증가 시	자본금 감소 시
첨부서면	√ 정관 √ 총사원동의서 √ 출자금납입증명서(또는 현물출자재산인도증명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정관 √ 총사원동의서 √ 공고와 최고를 증명하는 증명서 √ 변제영수증(담보제공증명서)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2.3.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2.3.1. 사업인허가 및 세금납부

사업인허가 확인 및 신청

인허가 여부 확인하기

▪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영위하려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창업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 인허가 사항 확인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식회사 설립』의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인허가 및

세금납부-사업의 인허가 확인 및 신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등록면허세의 납부

▪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

▪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매 1건당 40,200원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마목).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중과세

▪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현재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함]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함)은 제외함]

▪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위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본문).

※ 다만,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함)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3배가 가산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지방교육세의 납부

▪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 다만,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도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방법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려면 관할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인터넷납부 이택스(etax.seoul.go.kr)를, 지방에서는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3.2.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

회사의 성립

▪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1항).

등기신청인

▪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

설립등기 시 등기사항

▪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1항).

1.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을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2. 존립기간이나 그 밖에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3. 자본금의 액
4.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집행자의 주소는 제외함
5.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6. 정관으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공고방법
7.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의 등기사항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위의 1.부터 7.까지의 사항 외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68조제1항).

등기신청 시 제출서류

▪ 설립등기 신청인은 설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3호 참조).

▹ 정관

- 총사원동의서
- 출자금납입증명서
- 현물출자재산인도증서
- 업무집행자과반수동의서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등]
- 주민등록표등(초)본
- 대표업무집행자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

등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64조제1항 본문).

·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함]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소소개 → 등기소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그 신청인을 대리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와 법인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67조제2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하시면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 그리고 작성방식에 관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설립등기를 전자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의 개념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성립합니다.

※ 신청 및 첨부서류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 정관(외국법인만 해당) 1부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한 경우에만 해당) 1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 1부
-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1부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 1부
-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1부
- 신탁 계약서(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만 해당) 1부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 1부

세무서장의 직권등록

▪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국외사업자 등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를 거쳐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미등록 시 불이익(가산세의 부과)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노동절은 산정에서 제외함)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3. 유한책임회사의 운영

3.1. 업무집행 및 대표권

3.1.1.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자의 지정과 업무집행

업무집행자의 지정

▪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2제1항).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

▪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2제2항 전단).

▪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있는 경우에 그 각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2제2항 후단 및 제201조제2항).

▪ 정관으로 둘 이상을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87조의12제3항).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5제1항).

업무집행자의 의무와 책임

업무집행자의 경업금지의무

▪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營業部類)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합니다(「상법」 제287조의10제1항).

▪ 업무집행자가 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업무집행자에 대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그 업무집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상법」 제287조의10제2항, 제198조제2항 및 제3항).

▪ 이러한 권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해야 하며 다른 사원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287조의10제2항 및 제198조제4항).

업무집행자의 자기거래제한

▪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상법」 제287조의11).

사원의 감시권

회사서류, 업무 등에 관한 정기 검사

▪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영업년도 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4 및 제277조제1항).

법원의 허가에 따른 상시 검사

▪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에 따른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4 및 제277조제2항).

> ※ **업무집행자에 대한 벌칙**
>
> · 업무집행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거나 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22조제1항 및 제632조).
>
> · 업무집행자가 그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
> · 업무집행자에게 위의 이익을 약속, 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2항).
>
> · 업무집행자가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및 제633조).

업무집행권의 상실, 정지 및 가처분

업무집행자 권한상실 선고

▪ 업무집행자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7제1항 및 제205조제1항).

※ 위의 소(訴)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상법」 제287조의17제2항).

▪ 위의 권한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7제1항 및 제205조제2항).

업무집행의 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

▪ 사원이 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청구를 할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5제5항 참조).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5항).

직무대행자의 권한

▪ 위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287조의13 및 제200조의2제1항).

▪ 직무대행자가 이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87조의13 및 제200조의2제2항).

업무집행자에 대한 대표소송

사원의 대표소송

▪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1항).

소제기의 청구

1. 소제기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3조제2항).
2. 회사가 소제기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사원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3조제3항).
3. 30일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원은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3조제4항).
4. 회사가 소제기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사원의 위 2. 및 3.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3조제6항).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 회사는 이러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며, 소를 제기한 사원은 소를 제기한 후 지체 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4조).

제소사원의 권리의무

▪ 위의 2. 및 3.의 소를 제기한 사원이 승소한 때에는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업무집행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5조제1항).

▪ 반면, 위의 2. 및 3.의 소를 제기한 사원이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5조제2항).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 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써 판결을 하게 된 때에는 회사 또는 사원은 확정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2제2항 및 제406조제1항).

3.1.2.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유한책임회사의 대표

대표업무집행자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287조의19제1항).

▪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9제2항).

공동대표의 지정

▪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9제3항).

▪ 이 경우에 제3자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자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87조의19제4항).

회사와 사원 간의 소에 대한 대표권

▪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를 포함)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할 사원을 선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1).

대표의 권한과 책임

대표의 권한

▪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9제5항 및 제209조제1항).

▪ 다만, 이러한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87조의19제5항 및 제209조제2항).

회사와 대표의 연대 배상책임

▪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0).

대표의 변경

대표변경 등기

▪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주소변경 포함)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4항).

▪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직무를 행할 사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68조제2항).

제출서류

▪ 대표자 변경등기를 할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 변경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6호 및 제57호 참조).

구분	대표변경 시	대표의 주소변경 시
첨부서면	√ 정관 √ 총사원동의서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 √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등] √ 주민등록표등(초)본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유한책임회사 변경등기(대표의 변경)를 하려면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및 7,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대표권한의 상실

법원의 대표권한 상실 선고

▪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7제1항 및 제205조제1항).

※ 위의 소(訴)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상법」 제287조의17제2항).

판결 확정 후 변경등기

▪ 위의 권한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7제1항 및 제205조제2항).

※ 그 밖에 대표권한의 정지, 직무대행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은 업무집행자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업무집행자의 권한정지 가처분, 직무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유한책임회사의 운영-업무집행 및 대표권-업무집행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사원의 지분

3.2.1. 사원지분의 양도 등

사원의 지분

지분의 개념

▪ “지분”이란 사원의 지위에 기초한 사원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출자액에 따라 지분을 갖게 됩니다.

사원의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 비율

▪ 사원의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 비율은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 비율을 정합니다(「상법」 제287조의18, 제195조 및 「민법」 제711조 참조).

사원지분의 양도와 양수

지분 양도 시 다른 사원의 동의

▪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87조의8제1항).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8제2항).

▪ 다만, 정관으로 지분 양도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따릅니다(「상법」 제287조의8제3항).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 금지

▪ 유한책임회사는 사원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287조의9제1항).

▪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합니다(「상법」 제287조의9제2항).

사원지분의 상속

상속에 따른 사원지위의 승계

▪ 유한책임회사에서 사망은 사원의 퇴사원인이므로, 사원이 사망할 경우 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287조의25 및 제218조제3호).

▪ 그러나,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사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6 및 제219조제1항).

※ 상속인이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87조의26 및 제219조제2항).

사원지분의 압류

지분의 압류

▪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지분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9).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개월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9 및 제224조제1항).

▪ 그러나 이러한 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상법」 제287조의29 및 제224조제2항).

3.3. 사원의 가입과 탈퇴

3.3.1. 사원의 가입

사원의 가입

사원의 가입이란?

▪ "사원의 가입"이란 유한책임회사가 성립한 이후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금전 또는 현물을 출자하여 지분을 가지면서 원시적으로 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원의 가입방법

▪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3제1항).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키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6).

가입의 효력발생 시기

▪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됩니다(「상법」 제287조의23제2항).

가입 사원의 현물출자이행 의무

▪ 사원 가입 시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3제3항 및 제287조의4제3항).

사원의 가입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등기 신청

▪ 사원이 새롭게 가입을 하여 출자를 하면 등기사항 중 자본금의 액이 변경되므로 이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4항).

제출서류

▪ 등기신청인은 유한책임회사변경등기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8호 참조).

- 정관
- 총사원동의서

- 출자금납입증명서(또는 현물출자재산 인도증명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사원의 가입에 따른 자본금의 증가를 이유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 수도권 및 대도시에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 내의 회사의 자본이 증가된 경우, 그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3배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1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3.3.2. 사원의 퇴사

사원의 퇴사

사원의 퇴사란?

▪ "사원의 퇴사"란 유한책임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 사원이 「상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원의 퇴사 원인

▪ 사원이 퇴사하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이 ① 임의퇴사, ②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 ③ 법원의 제명에 따른 강제퇴사, ④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임의퇴사	—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 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4 및 제217조제1항). ※ 다만, 사원의 퇴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4)

당연퇴사	— 사원은 ①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망, ④ 성년후견개시, ⑤ 파산, ⑥ 제명(除名) 등의 사유로 퇴사합니다(「상법」 제287조의25 및 제218조). —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6 및 제219조제1항). — 상속인이 전항의 통지 없이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87조의26 및 제219조제2항).
강제퇴사	— 사원이 ①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②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를 위반한 때, ③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④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⑤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7 및 제220조제1항). ※ 다만, 사원의 제명에 필요한 결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7)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개월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9 및 제224조제1항). — 퇴사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상법」 제287조의29 및 제224조제2항). ※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는 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3516 판결).

퇴사사원에 대한 지분 환급

▪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8제1항).

▪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상법」 제287조의28제2항).

▪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8제3항).

지분환급에 대한 채권자 이의제기

▪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퇴사하는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상법」 제287조의37에 따른 잉여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환급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0제1항).

▪ 회사는 사원이 퇴사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지분 환급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0제2항 본문 및 제232조제1항).

▪ 채권자가 위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지분 환급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87조의30제2항 본문 및 제232조제2항).

▪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을 환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287조의30제2항 단서 및 제232조제3항).

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1).

퇴사에 따른 변경등기

사원의 퇴사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

▪ 사원이 퇴사를 하면 지분을 환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등기사항 중 자본금의 액이 변경되므로 이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4항).

제출서류

▪ 등기신청인은 유한책임회사변경등기신청서와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9호 참조).

- 정관
- 총사원동의서
- 공고와 최고를 증명하는 증명서
- 변제영수증(담보제공증명서)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법인의 변경등기 시 자본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40,2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바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3.4. 본점과 지점

3.4.1. 본점의 이전

유한책임회사의 본점

본점의 개념

▪ 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소재지가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상법」 제171조 참조).

본점소재지의 정관기재 및 등기

▪ 유한책임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정관에 절대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며,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제1호 및 제287조의5제1항제1호).

본점의 이전

본점의 이전등기

▪ 유한책임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3항 및 제182조제1항).

※ 등기신청인이 본점이전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본점 이전등기 신청 및 제출서류

▪ 본점이전 등기는 다음과 같이 본점소재지에 따라서 신청하는 양식 및 방법이 다릅니다.

구분	등기신청 방법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	― 본점을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전 등기는 회사의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신청합니다(「상법」 제182조 및 제287조의5제3항 참조). ―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본점이전등기 신청서(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4-1호). √ 정관 √ 총사원동의서(정관의 변경을 요할 경우) √ 업무집행자과반수동의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점소재지가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 본점을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55조). ―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본점이전등기 신청서(타관할로의 본점이전)』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4-2호). √ 정관 √ 총사원동의서(정관의 변경을 요할 경우) √ 업무집행자과반수동의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이전등기 신청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 본점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등기신청 방법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	― 등록면허세는 112,5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라목,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본점소재지가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 신(新)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라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 만약, 대도시(과밀억제권역을 말함) 밖에 있는 본점을 대도시 내로 이전하면 그 본점이전은 회사의 설립으로 파악하여 회사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이 등록면허세는 3배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참조). ―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신(新)소재지의 등기신청수수료는 35,000원, 구(舊)소재지의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3.4.2. 지점 설치와 이전, 폐지

지점의 설치

지점설치 등기

▪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2항 및 제181조).

※ 등기신청인이 지점에 관한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제출서류
— 지점설치 등기를 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 지점설치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자 과반수동의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현재 유한책임회사 지점 관련 등기에 관한 양식은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회사 지점관련 등기에 관한 양식을 다운받아 유한책임회사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점의 이전

지점이전 등기

-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3항 및 제182조제2항).

※ 등기신청인이 지점에 관한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제출서류
— 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지점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점소재지에서)지점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자 과반수동의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지점의 폐지

지점폐지 등기

- 지점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4항).
- 회사 본점소재지에서 지점폐지 등기를 위해서는 지점폐지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자 과반수동의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지점설치·이전·폐지 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지점설치·이전·폐지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 대도시(과밀억제권역을 말함. 이하 같음)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는 3배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이며,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3.5.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3.5.1. 재무제표의 작성 등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회계원칙

▪ 유한책임회사의 회계는 「상법」과 「상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릅니다(「상법」 제287조의32).

재무제표의 작성 등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3 및 「상법 시행령」 제5조).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재무제표의 비치 및 공시

▪ 업무집행자는 ① 자본변동표, ②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③ 대차대조표, ④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4제1항).

▪ 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財務諸表)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4제2항).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

자본금의 액

▪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으로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5).

자본금의 감소

▪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6제1항).

▪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287조의36제2항).

▹ 회사는 자본금 감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금 감소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6제2항 및 제232조제1항).

- 채권자가 위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자본금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32조제2항).
-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6제2항 및 제232조제3항).

잉여금의 분배와 반환청구 등

잉여금의 분배

-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하 “잉여금”이라 함)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7제1항).
- 잉여금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상법」 제287조의37제4항).
- 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7제5항).

잉여금의 반환청구

- 위의 잉여금 분배 한도를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그 잉여금을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7제1항 및 제2항).
- 잉여금 반환청구에 관한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상법」 제287조의37제3항).

사원지분 압류 시 잉여금의 배당

-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잉여금의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7제6항).

4. 회사의 합병, 소멸 등

4.1.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4.1.1. 영업양도

영업양도의 개념

영업양도란?

▪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19314 판결).

> ※ **대법원 판례(영업의 양도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
>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
> ※ **대법원 판례(영업의 양도의 판단기준)**
>
>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 [2]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므로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계약이 있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영업재산의 이전 경위에 있어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영업양도가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있고 그 계약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어 「상법」상 영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영업양도와 합병의 비교

▪ 영업양도와 비슷한 조직변경 형태에는 합병이 있습니다. 영업양도와 합병은 다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영업양도	합병
당사자	회사, 개인상인, 비상인(양수인) 간	회사와 회사 간
방식	특정된 방식이 없음	법정의 절차에 따라야 함
재산이전 방법	특정승계(재산의 개별적 이전)	포괄승계
고용이전 여부	포괄승계	포괄승계

영업양도 절차

총사원의 결의

▪ 영업양도를 하려면 정관변경이 필요하므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287조의16).

▪ 다만, 회사를 청산할 때에는 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는 경우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으면 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7조).

영업양도 방식(불요식 계약)

▪ 영업양도의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계약은 일반적으로 양도 및 양수받는 회사 간의 영업양도계약서 작성에 따른 서면합의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영업양도의 효과

고용관계의 이전(포괄승계)

▪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영업재산의 이전

▪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 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해야 합니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018 판결).

양도인의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

▪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1조제1항).

▪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41조제2항).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상호속용)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2조제1항).

※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 이 경우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습니다(「상법」 제42조제2항).

양수인에 대한 변제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43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4조).

※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영업양수인에 대해서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그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상법」 제44조의 법리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받아들이는 취지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 경우에도 적용되어, 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위 채무변제의 책임이 발생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 영업양수인이 위에 따라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45조).

4.1.2. 합병

합병의 개념

회사의 합병

▪ “합병”이란 「상법」 상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고, 회사 구성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 「상법」 및 특별법에는 다음과 같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산(解散)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74조제3항).
- 다른 회사와의 합병으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 회생절차 중인 회사는 회생계획에 '합병'에 관한 사항을 정해 합병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제210조 및 제211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주권상장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함)가 그 계열회사(계열회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을 포함함)와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주권상장회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합병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65조의4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유한책임회사의 합병형식

▪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174조제1항), 회사의 종류가 다른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74조제2항 참조).

합병절차

합병계약의 체결

▪ 합병을 하려는 회사의 대표기관 간에 합병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됩니다.

▪ 유한책임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상법」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계약서에는 합병의 조건, 합병을 할 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종류,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회사의 정관작성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 다만,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523조, 제524조 및 제603조 참조).

합병의 결의

▪ 유한책임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1 및 제230조).

▪ 신설합병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각 회사는 합병결의에서 설립위원을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설립위원은 회사의 정관작성이나 그 밖의 설립에 관한 행위를 수행합니다(「상법」 제175조제1항).

회사채권자 이의제기 절차

▪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1 및 제232조제1항).

▪ 채권자가 위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87조의41 및 제232조제2항).

▪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1 및 제232조제3항).

※ 회사(대부분은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를 말함)가 합병결의에 대한 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또는 회사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위반하여 합병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제635조제1항제2호 및 제14호).

합병등기

합병등기(변경등기, 해산등기, 설립등기)

▪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①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②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③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1 및 제233조).

합병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 위 각각의 합병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4조, 제125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60-1호, 제60-2호 및 제60-3호 참조).

구분	제출서류
변경등기 (유한책임회사가 존속회사로 되어 흡수합병을 한 경우)	√ 합병계약서 √ 총사원동의서나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 공고와 최고를 증명하는 증명서 √ 변제영수증(담보제공증명서) 또는 이의없다는 진술서 √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주식금액,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를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및 제151조).
해산등기 (유한책임회사가 소멸회사로 되어 흡수·신설합병을 한 경우)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는 매 1건당 4만2백원을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바목 및 제151조).

설립등기 (유한책임회사가 신설회사로 되어 신설합병을 한 경우)	√ 정관 √ 합병계약서 √ 합병에 관한 총사원동의서 √ 소멸회사의 총사원동의서나 공증받은 사원(주주) 총회의사록 √ 설립위원자격증명서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없다는 진술서 √ 취임승낙서 √ 주민등록표등본 √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사채상환완료증명서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의 변경등기, 해산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7,000원이며, 신설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35,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

합병의 효과 등

합병의 효력발생

▪ 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① 변경등기, ② 해산등기, ③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87조의41 및 제234조).

합병의 효과

▪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상법」 제287조의41 및 제235조).

4.1.3. 조직변경

유한책임회사의 조직변경

조직변경이란?

▪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 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3제2항).

※ 이에 반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3제1항).

주식회사로의 변경 시 주식 발행가액의 제한

▪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87조의44 및 제607조제2항).

▪ 이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한 총회결의 당시의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4 및 제607조제4항 전단).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절차

총사원의 동의

▪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3제2항).

채권자 이의절차

▪ 회사는 조직변경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4 및 제232조제1항)

▪ 채권자가 위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87조의44 및 제232조제2항).

▪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4 및 제232조제3항).

법원의 인가

▪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상법」 제287조의44 및 제607조제3항).

조직변경 등기

▪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4, 제607조제5항 및 제606조).

▪ 조직변경으로 인한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한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 전의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해야 하며, 유한책임회사의 **해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산등기신청서에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65조).

>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
> 조직변경에 따른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를 하려면 다음의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제1항, 제2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항 본문).

구분		납부액
등록면허세	해산등기	40,200원
	설립등기	납입한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등록면허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경우 112,500원)
등기신청수수료	해산등기	7,000원
	설립등기	35,0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 유한책임회사의 해산등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회사의 합병, 소멸 등-유한책임회사의 소멸-해산 및 회사의 계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유한책임회사의 소멸

4.2.1. 해산 및 회사의 계속

유한책임회사의 해산

회사의 해산이란?

▪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가 영리적 활동을 마치고,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해산에 의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지만, 해산으로 인해 바로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법인격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해산사유

▪ 유한책임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합니다(「상법」 제287조의38).

1.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사원이 없게 된 경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하는 경우(해산명령 및 해산판결)

구분	해산명령	해산판결
사유	①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②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1년 이상 영업을 휴지(休止)하는 때, ③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상법」 제176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상법」 제287조의42 및 제241조)
절차	① 이해관계인의 청구, ② 검사의 청구, ③ 법원의 직권(「상법」 제176조제1항)	각 사원의 청구(「상법」 제287조의42 및 제241조제1항)
적용법률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소송법」
재판관할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	본점소재지의 관할지방법원(「상법」 제287조의42, 제241조제2항 및 제186조)
효과	해산명령재판의 확정으로 해산(「상법」 제287조의38)	각 사원이 승소한 경우 판결의 확정으로 해산(「상법」 제227조제6호)하며, 각 사원이 패소한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상법」 제287조의42, 제241조제2항 및 제191조)

해산등기

▪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9).

※ 등기신청인이 해산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3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61호).

- 정관
- 총사원동의서 등 해산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신청인자격증명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해산등기를 하려면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및 7,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회사의 계속

회사계속의 개념

▪ "회사의 계속"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해산된 회사가 회사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사원의 동의로 다시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계속의 사유

▪ 위의 유한책임회사 해산사유 중 ①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및 ②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않은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87조의40 및 제229조제1항).

회사계속의 등기

▪ 회사가 해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회사의 계속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0 및 제229조제3항).

※ 등기신청인이 회사계속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및 제1호).

▪ 회사계속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첨부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27조, 제109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64호).

- 회사계속에 관한 총사원 또는 일부 사원의 동의서
- 정관
- 총사원의 동의서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회사계속등기를 하려면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및 7,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4.2.2. 유한책임회사의 청산

유한책임회사의 청산

청산의 개념

▪ 일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회사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 회사를 “청산 중의 회사”라 합니다. 회사의 청산은 법원이 감독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8조제1항 참조).

청산회사의 권리능력

▪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45조).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 회사의 해산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해야 합니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46조).

유한책임회사의 청산 절차

청산인의 선임

▪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며, 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자가 청산인이 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1조).

▪ 다만, 회사가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인하여 해산된 때에는 법원은 사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2조).

※ 회사가 법원에서 선임한 청산인에게 사무의 인계를 게을리 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0호).

> **※ 청산인의 해임방법**
>
>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61조).
>
> 청산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62조).

대표청산인의 선임

▪ 청산인은 각자 청산중의 회사를 대표하지만,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65조, 제207조 및 제208조).

▪ 업무집행자가 청산인이 된 경우에는 해산 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고, 법원이 여러 명의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이 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5조).

▪ 대표청산인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나, 청산인의 직무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對抗)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 제254조제3항, 제265조 및 제209조제2항).

청산인의 선임등기

▪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업무집행자가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3조제1항).

-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다만,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청산인의 주소를 제외)
-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 수인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청산인 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제62호).

- 정관
- 총사원과반수동의서
- 선임결정서등본(법원이 선임한 경우)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청산인의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
-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총사원동의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청산인 선임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 40,200원과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7,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청산사무의 집행

▪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해야 하며,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청산의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6조).

▪ 유한책임회사의 청산인은 다음과 같이 ① 현존사무의 종결, ②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③ 재산의 환가처분, ④ 잔여재산의 분배의 순서대로 직무를 수행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4조제1항).

직무	내용
1. 현존사무의 종결	청산인은 회사의 해산 당시에 아직 종료하지 않은 사무를 완료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4조제1항제1호).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청산인은 회사가 가진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그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4조제1항제2호). 회사채무의 변제도 변제기에 하는 것이지만,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회사채무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9조제1항). √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에는 이자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고, 이자 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59조제2항 및 제3항). √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그 밖에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액을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9조제4항).
3. 재산의 환가처분	청산인은 회사재산을 청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금전으로 바꾸는 처분행위를 해야 하며, 그 환가처분의 방법은 재산을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것 외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7조).
4.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完濟)한 후, 남은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기준을 정관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상법」 제287조의18, 제195조 및 「민법」 제724조제2항).

▪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그 과반수의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4조제2항).

▪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은 위의 직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54조제3항).

청산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자기거래제한

▪ 회사와 청산인은 위임관계이므로, 청산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산사무를 수행해야 하며, 청산인이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65조, 제382조제2항 및 「민법」 제681조).

▪ 청산인이 임무를 게을리 하는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대표청산인이 사무집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65조, 제399조, 제401조 및 제210조 참조).

▪ 청산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원 과반수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제265조 및 제199조).

※ **청산인 직무에 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벌칙

√ 청산인이 그 직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거나 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2조제2항 및 제632조).

√ 청산인이 그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 청산인에게 위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2항).

√ 위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 청산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상법」 제633조).

과태료 부과

√ 청산인이 청산도중 파산원인을 발견하였음에도 파산선고 신청 및 공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2호).

√ 청산인이 회사채무를 완제하지 않고 사원에게 회사재산을 분배하거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 필요재산을 보류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5호).

청산의 종결

▪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사원에게 교부하고 총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63조제1항).

▪ 계산서를 받은 사원이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청산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63조제2항).

▪ 회사의 장부와 영업 및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는 본점소재지에서 청산종결 등기를 한 후 10년간 이를 보존해야 하고,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총사원 과반수결의로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66조).

청산종결 등기

▪ 청산을 마친 경우 청산인은 계산서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64조).

※ 등기신청인이 청산종결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 청산종결 등기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63호 참조).
  - 청산계산승인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청산종결등기를 하려면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및 7,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사원 책임의 소멸시기

- 사원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67조제1항).
- 위의 기간경과후에도 분배하지 않은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45 및 제267조제2항).